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64
----------	-----

2021. 3. 23.(화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임동현 의원

나. 발의일자: 2021년 3월 3일

다. 회부일자: 2021년 3월 5일

라. 상정일자: 2021년 3월 15일

(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임동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건전하고 자율적인 학원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원자율지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학원자율지도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2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홍만표)

- 본 조례안은 건전하고 자율적인 학원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‘학원자율지도위원회’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것으로, 안 제12조에 ‘학원 자율 지도위원회’의 설치 근거를 두고,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
- 2021년 3월 기준 청주 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는 1,945개소이고, 청주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공무원은 4명임. 이에 따라, 2020년도에는 청주시 전체 학원 및 교습소 중 23.6%에 해당하는 460개소만이 청주교육지원청 으로부터 지도·점검 받았음. (※ 2020년도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자료)
- 현재 운영 중인 학원 및 교습소의 숫자와 비교하여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, 학원자율지도위원회를 구성 하여 자율 지도활동을 전개하려는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(학원자율지도위원회)** ① 교육감은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원자율지도위원회(이하 “지도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지도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교육감은 지도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<u>제12조(학원자율지도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 ① 교육감은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원자율지도위원회(이하 “지도위원회” 라 한다)를 구성 ·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지도위원회의 구성 ·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③ 교육감은 지도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
관계 법령

□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(약칭: 학원법)

[시행 2020. 11. 27.] [법률 제17311호, 2020. 5. 26., 타법개정]

제4조(학원설립·운영자 등의 책무) ① 학원설립·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,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, 적절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28., 2011. 7. 25.>

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, 적절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28., 2011. 7. 25.>

③ 학원설립·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“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·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·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·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20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16조(지도·감독 등)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,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·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·설비, 교습비등, 교습에 관한 사항과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,

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·설비, 장부,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시설·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7. 25., 2015. 2. 3., 2020. 5. 26.>

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 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7. 25.>

⑤ 제3항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⑥ 교육감은 미등록·미신고 교습, 교습비등 초과 징수,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 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7. 25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지도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(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4항 제1호에 해당)
“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”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 됨.